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
----------	-----

제출일자 : 98. 10.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사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 행정자치부 건행 13930 - 665('98.5.7)호로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건행 13930 - 1039('98.7.24)호로 개정조례표준안 수정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표준조례안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3조)
-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 신설.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한 사항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절차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방지. (안 제11조)

3. 근거법규

-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
- 울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기타사항

- 입법예고 : 98. 9. 25 ~ 98. 10. 15 (경상일보, 한울신문, 울산일보)
- 입법예고결과 : 다른의견없음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자연재해대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 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각각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자연재해대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생략)</p>	<p>제2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재정형편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은행의 가장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비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②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탁관리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p>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p> <p>④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대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p>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신설)	<p>제9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재해대책업무담당주사</p> <p>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신설)	<p>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u>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u></p> <p><u>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u></p> <p><u>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u></p> <p><u>4.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u>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 일전까지 각각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u></p>
(신설)	<p><u>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u></p> <p><u>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u></p>
(신설)	<p><u>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부 칙 —</p> <p><u>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u></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6)

1. 의안명 :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8. 10. 31.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8. 11. 7.
- 라. 위원회 심사 : '98. 11. 13.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 행정자치부 건행 13930-665('98. 5. 7.)호로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또한 울산 광역시 건행 13930-1039('98. 7. 24.)호로 개정조례표준안 수정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표준조례안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

나. 주요골자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 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토록 조문신설.
-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규정함.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다.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 울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4. 검토보고요지

- 본조례안 제3조와 제4조의 순위변경 및 문안을 수정, 추가, 보완하였으며 특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 처리토록 하였고 기금운용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토록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는 지방 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4조에는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58조에도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므로 재해업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